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김소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40
----------	-------

발의연월일 : 2026. 2. 3.

발 의 자 : 김소희 · 우재준 · 정연욱
조경태 · 임이자 · 김기현
조승환 · 유용원 · 김선교
김기웅 · 김미애 · 이현승
김상훈 · 김용태 · 백종헌
서일준 · 박덕흠 · 이종배
박수민 의원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산업활동 및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위험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합·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예측·평가 체계, 적응정보 관리 및 공개·활용, 성과·진척도 평가,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실행체계 등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후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분석과 기후위험 평

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생산·관리·활용을 체계화하며, 기후위험지도 작성과 적응성과·진척도 및 주류화 평가를 통해 정책의 이행과 환류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과 기후보험 도입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보강하고, 광역협의회 운영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중앙, 지방, 공공기관, 민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현재의 기후위기와 예상 가능한 미래 기후위험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3. “기후위기 취약성”이란 기후변화에 노출된 대상의 민감성과 적응역량 수준에 의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여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나 정도를 말한다.
4. “기후위험”이란 기후위기로 인하여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 환경·경

제·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이 초래하는
파급효과의 정도를 말한다.

5. “기후영향”이란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
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 환경·경제·사
회에 미치는 변화의 결과를 말한다.

6.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
장 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을 말한다.

7. “기후회복력”이란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하여 기
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생활·사회·경제·자연환경
이 그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거나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는 기후위
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말한다.

8.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노인, 아동,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
·어업종사자, 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
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말한다.

9. “기후위기 적응정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말한
다.

10. “이상기후”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현상을 말한다.

11. “기후보험”이란 기후위기로 인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발생하

는 생명·신체 및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기후위기 적응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과의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하며, 기후위기 적응 부문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에 있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기후영향에 대한 최신의 과학적 조사·분석과 예측에 기초하여 취약성과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3.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의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시책을 추진하고, 주기적·지속적으로 진척경과를 점검·평가하여 적응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4.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에 대하여 기후정의 실현 및 기후회복력 향상 관점에서 우선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5.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관련된 모든 정책·시책에 일관된 방식으로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하여야 하며, 영역별·분야별 적응정책간의 정합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영향에 따른 장기 전망을 예측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기후영향 및 장기 예측 결과를 관계 법령, 국가 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 설계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을 개발·보급하며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응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응시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책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후위기 취약성을 진단하고 예상되는 기후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민이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국민과 사업자는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후위기 적응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 이를 이용한 조사 및 평가, 적응에 관련한 시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 및 기후위험 평가

제7조(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등) 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이하 “적응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정보(이하 “적응정보”라 한다)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연계·활용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사항에 대한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 지역에 대한 생태계·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등의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이하 “취약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시설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응정보를 생산·관리·활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통합 관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응정보의 수집·생산 및 관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등) ① 정부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과학적 방법론 및 연구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1.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2. 취약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시설 및 제공하는 서비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4. 그 밖에 적응 정책·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등 취약실태 조사·분석 방법, 시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후위험 평가) ① 정부는 제8조의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최신의 과학적 정보를 활용하여 부문별 기후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후위험 종합평가보고서(이하 “종합평가서”라 한다)를 5년마다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 공개 시 종합평가서를 1년 이내에 작성·갱신해야 한다.

③ 정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취약

기관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같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1항의 기후위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취약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서 작성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취약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행정계획
2.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
대 종합계획
5. 그 밖에 기후위험 평가결과의 반영이 필요한 계획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후위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기후위험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종합평가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적응정보의 정의, 조사의 방법·기준 및 자료의 처리·활용 방법 등 적응정보의 표준설정 및 관리
2. 제7조에 따른 적응정보 수집·분석 및 생산·관리를 위한 교육
3. 제8조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및 관련 방법론 개발
4. 제9조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 및 관련 방법론 개발

5.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
 6. 그 밖에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국가기후위기정보관리센터(이하 “정보관리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후위기적응정보 활용 및 기후회복력 증진 시책

- 제11조(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 ①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취약기관, 산업계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의 원활한 공개 및 공동활용을 위해 적응정보 생산 표준체계를 설정·관리할 수 있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을 통해 적응정보의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응정보 공개와 공동활용, 생산표준 설정·관리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후위험지도 및 저감사업의 추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기후위기 취약실태와 기후위험을 등급으로 구분한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지도의 작성 방법, 기준 및 내용,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인프라, 산업단지, 지역의 국가 기후위험 저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등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와 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지도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의 계획·설계·시행에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기후위기 적응 평가

제13조(기후위기 적응지표 및 적응성과·진척도 평가)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적응역량 향상 및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각 분야별 개별지표와 상호비교가 가능한 포괄지표 등 기후위기 적응지표(이하 “적응지표”라 한다)를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관련 지표를 고려하여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적응지표에 따라 2년마다 기후위기 적응성과·진척도(이하 “적응성과·진척도”라 한다)를 점검·평가하고 부문별 결과를 종합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개선 계획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지표 및 적응성과·진척도 평가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성과·진척도 평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적응지표의 개발·보급 및 적응성과·진척도 점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촉진)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행정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기후위험을 고려하고 기후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등 기후

위기 적응에 대한 사항이 주류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에 대한 평가(이하 “적응 주류화 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적응 주류화 평가를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응 주류화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 주류화 평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대상, 절차, 방법 등 적응 주류화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제15조(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이상기후·극한기후 등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 및 피해,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취약지원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기후위기 취약지역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사업(이하 “취약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약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2.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 종합평가
3.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지도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취약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약지원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기후위기 적응 광역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제1항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효율적 수립·시행, 같은법 제38조제1항의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의 연계성 제고 등 광역적인 차원에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필요한 협의를 위하여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기후위기 적응 광역협의회(이하 “광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협의회는 시·도 및 시·군·구 행정기관, 지역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역 연구기관, 취약기관, 사업자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다.

③ 광역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의 기후적응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정보관리센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에 자료의 제공, 의견의 개진,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광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후보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기업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고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기후보험의 운영) ①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보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의 일부 및 보험의 운영·관리 등의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후보험의 종류, 대상, 가입 방식,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정부는 기후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이하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그가 관리·운영하는 관

런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거나 전산시스템과의 연계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등이 기후보험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후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기후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정부는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후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공동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산업계 기후위험 대응지원) 정부는 기후위기가 기업 가치에 미

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시·공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산과 활동에 미치는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 등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2조(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지식보급)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기후영향·취약성·위험 평가 등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등)

① 정부는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기후회복력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후위기 취약실태, 기후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조사·분석
2.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방법론 및 평가 도구 개발
3. 적응정보의 수집·관리 등 관련 표준 개발
4. 그 밖에 기후영향·취약성·위험 평가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개발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등 적응역량 및 기후회복력 증진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의 기준·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① 정부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정지원 등)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적응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학술조사·연구·기술 개발·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그 밖에 재정·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권한의 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